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56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의자 : 서영교 · 박희승 · 임오경

정준호 · 양부남 · 박홍배

송재봉 · 김문수 · 이성윤

최혁진 · 박선원 · 김태선

복기왕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 ·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